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 -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

배희선(서울대학교 강사)

I. 서 론

우리나라 각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시기와 범위에 있어 차이는 보이나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따라 기부주체인 부모와 수령대상인 자녀의 경제적 복지수준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만 18~20세 정도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여 부모의 양육의무가 대체로 끝나며, 자녀들은 이 시기에 주거적·경제적 독립을 시도하고 대학진학 또는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나라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상으로나 생애주기상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비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편이다.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주요한 비목들인 대학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의 경우 상당부분을 부모로부터 지원 받고(정은주, 1996; 이기춘·조은정, 1992), 자녀의 결혼 또는 취업으로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인 자녀의 주거마련이나(한국은행 도시가계조사, 1996), 기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부모의 생존기간뿐 아니라 사후까지 지속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비목을 통해 여러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김승학, 1991) 할 뿐 아니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박명화·정주원, 2000; 박재간, 1990). 더욱이 가족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한남제, 1994, p60)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조기이전이나 과도한 범위의 이전은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위와 권위의 하락이나 가족간의 갈등, 노후부양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배종렬, 1997). 따라서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부모의 경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년기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노년기를 맞게 될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 및 이전여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경제적 자원이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가계이며, 특히 이전시기와 이전여부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 및 가족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학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소득불평등도(Tomes, 1981; Menchik, 1980; Pryor, 1973)나 부의 축적(Kotlikoff & Summers, 1981) 혹은 사회적 이동도(Becker &

Tomes, 1979)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을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중노년기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농촌이나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김종호, 1985; 이가옥, 1994)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험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배종렬, 1997; 이동훈, 1980; 홍영림, 1997) 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상속 시기를 다룬 조사(김기경·박혜인, 2001)가 가족학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가계의 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두는 가계재무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물로는 미국의 은퇴노인 가계를 대상으로 이전여부와 이전액을 분석한 연구(홍공숙·김순미·김연정, 1996)와 재산상속행동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박명화·정주원, 2000)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기존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시점에 최종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전시기는 생전에 미리 이전하는 증여나 사후에 이전하는 상속으로만 구분하여 선택하는 내용으로, 이전여부는 단순히 자녀에게 이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즉,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다양한 비목을 통해 여러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이전시기 및 이전여부에 대한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은 자녀의 성인기부터 시작하여 부모의 이전 완료기까지 가계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단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편이므로 가계의 주요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앞으로 이루어질 특정비목의 이전여부는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이전비목의 규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절감이나 부모가 원하는 대상과 상속분의 이전을 위해서도 성인 자녀에 대해 이루어지는 자원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체계나 상속법에 규정된 상속분과 같은 현행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 198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장자상속과 남아선호사상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서 출생관련요인이 중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부족하고 저축률은 높은 편인데,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는 자녀의 특성이나 부모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형태와 보유에 있어서 소득원과 자산수준이 다양하게 포함되는 도시가계에 초점을 두어 기존에 이전된 증여비목, 상속법과 증여 및 상속세법 지식수준,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경제적 특성 등을 결정요인으로 고려하여 첫째, 성인 자녀에 대한 이전시기를 상속, 증여, 혼합형으로 구분하여 이전시기별 이전규모를 조사한 다음, 이전시기의 결정요인들을 밝히고, 둘째, 이전, 상속, 증여 여부의 결정요인들과 증여여부는 다시 주요 증여비목들의 이전여부로 세분화하여 결정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 및 이전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독특한 이전기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하여 개인이나 가계의 장기 재무계획과 재산상속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생애주기의 후반기에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 증여 및 상속과 관련된 세금제도 및 상속법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개념과 범위

경제적 자원이란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며 유형한 것으로 크게 소득과 부로 구분된다. 부는 일정 시점에서의 양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저장(stock)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의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표현한다는 면에서 유량(flow)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에 지출하고 남은 유량소득은 부의 원천으로서 저장될 수 있으며, 부는 순자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성되고 흔히 재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전소득이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획득되는 것으로 공적 이전과 사적 이전으로 구분된다. 공적 이전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수혜(government transfer)가 있으며, 사적 이전은 개인간 혹은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이전(interfamily transfer, informal transfer)을 말한다.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은 시장기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2차적인 소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보장 수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조건이 요구되는 반면에 사적 이전의 경우에는 특별한 반대급부나 수혜자격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구별된다(김기덕·손병돈, 1995). 가계에서 성인 자녀에 대해 사적으로 이전 가능한 경제적 자원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금융기관 저축, 유가증권, 현금, 금괴 및 보석, 골동품 등이 있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범위는 자녀의 성인기 시작부터 지출되는 주요 비목의 비용부담에서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자녀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자원까지를 포함하며, 경제적 자원이전은 크게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된다. 현행법에서 상속이란 기부자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만을 뜻하며(이영준, 1993, p31), 증여란 기부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생전상속과 동일한 개념이다.

성인에 대한 정의는 만 20세에 이르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적 측면과 특정 조건을 갖추므로써 용인되는 사회적 측면을 통해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법적 규정과 우리나라의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흐름을 고려하여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란 부모의 사후에 자녀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자원의 양으로 규정한 상속액과 부모의 死前에 지출되는 자녀의 대학교육비용, 결혼비용, 주택비용, 그리고 이 비용 외에 자녀에게 이전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타증여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

1) 이전시기

한국인들은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형태로 노후의 경제적 자원을 정리하기 위해 고래의 풍속에 따라 연로한 경우 회갑일과 같은 날에 자녀와 친척을 모아놓고 재산을 생전에 분배하는 일이 관례였다(김중호, 1985). 따라서 부모들 가운데 재산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를 통해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증여는 1970년대까지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루어진 노인들의 재산 상속 이전시기도 사전증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기경, 박혜인, 2001). 사전증여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함께 재산의 통제권이 자녀에게 이전되는데, 과거에는 부모의 재산권이 이양된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부모부양 및 효의식이 감소됨에 따라 부모의 재산소유권이 자녀에게 이전된 후에는 부모의 의지대로 처분될 수 없어 가족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배종렬(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로 오면서 사전증여가 줄고, 사후상속이 증가하는 것은 물질적 재산을 통해 부모의 권위와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녀들의 부양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Bernheim, B. D., Shleifer, A., & Summers, L. H., 1985)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산문제에 관한 한 부모 자녀간의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증여와 같은 조기이전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의존은 부모-자녀간 갈등뿐 아니라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점과 국가 경제와 가족 및 자녀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년후반기와 노년기 가계의 경제적자원의 이전시기에 대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표 1-1>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

	사전증여	사후상속	혼합형
해방전	42.3	36.5	21.1
해방후 6.25	31.9	61.7	6.4
1950년대	32.7	49.3	18.0
1960년대	37.4	49.5	13.1
1970년대	47.3	32.5	20.2

출처: 이동훈(1980)

2) 이전여부

경제적 자원이전은 크게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된다. 부모들은 성인자녀의 생애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특정비목의 이전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이전여부를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증여는 성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의 성인기 시작부터 부모의 死前까지 성인 자녀에 대해 이전하고자 하는 주요비목인 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기타증여액으로 나누어 이전여부를 알아보고, 부모의 사후에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상속의 이전여부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증여여부

① 교육비용 이전여부

대학교육은 성인 자녀의 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한 대표적인 인적자본 투자 방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육은 진학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익률을 보장하는 편이고, 실물자산의 증여와는 달리 비과세 대상일 뿐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이며, 동시에 실물자산의 증여와는 다른 만족감을 부모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대학교육 투자는 매우 선호된다(한상국, 배준호, 이광재, 1996). 교육비용의 투자요인에 대한 주장은 크게 부모의 富보다는 자녀의 인지능력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설명(Davies, 1996)과, 전문직이나 관리직과 같은 특정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자녀의 인지능력보다 부모의 부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투자비용도 증가(한상국 외, 1996)한다고 보는 견해가 양립되고 있다. 후자에 따르면, 부모의 富 보유는 자녀에 대한 물적인 이전뿐 아니라 인적투자를 통해 부모의 부가 세습되어 부모와 자녀의 富 수준의 상관도는 증가하여 부의 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

② 결혼비용 이전여부

중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러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한 경제적 자원이전 외에 부모의 가장 큰 경제적 자원이전은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 나라 의례는 갑오경장 이후 개화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복잡하게 허식화되어(박정순, 1977; 이기춘·조은정, 1992, 재인용) 결혼에 수반되는 비용이 확대되었으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혼식, 배우자 예물, 가족 예물, 살림마련, 신혼여행, 합 값으로 구성된다.

젊은 세대의 막대한 결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통한 비용충당 부분에 관하여 신혼기 가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기춘·조은정(1992)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부모가 결혼비용을 전담한 경우가 각각 37.5%와 37.7%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는 남녀 각각 약 22%와 18%에 지나지 않아 결혼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많은 부분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③ 주거마련비용 이전여부

우리 나라 현실과 관련하여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는 자녀들이 주거 단위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과정에서이다. 이와 같이 자녀들의 주거비용 마련에 있어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 이전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산업화에 역점을 둔 정책에 힘입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따른 부의 축적은 주택투기를 조장하여 주택구입비 및 임대료 상승과 주택난 심화를 가져와 주거마련에 있어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강만재, 1994). 둘째, 이와 같은 계층별 주택문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반면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주 대상은 어느 정도의

부를 지니고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편이며, 주택용자의 수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도 일정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강만재, 1994).

따라서 성인 자녀들의 결혼과 함께 주거적 독립을 위해서 주거마련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제도적인 도움이 매우 적은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들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기타증여액 이전여부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주로 이루어지는 비목으로는 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 비용 외에도 자동차와 같은 고가의 내구재 구매, 사업자금 지원, 부의 증가를 위한 일정량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재산증식을 위한 증여가 서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데, 이는 자녀의 성공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납부된 증여세의 규모를 통하여 추정된 이전된 재산가액은 상속가액의 1/3정도이며, 증여세를 낸 인원도 상속세 경우의 10배 - 20배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 조세통계, 2000). 증여세를 낸 경우는 대부분 고액의 증여를 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각 가계에서 증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전규모는 세금액을 통해 추정된 금액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이루어지는 증여를 통한 이전여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2) 상속여부

우리 나라 노인들은 자녀에 대한 재산상속 의식을 상위가치로 여기는 편이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통한 자녀의 비인적 자본 축적을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축의 주요 동기중의 하나가 상속임을 밝힌 연구들(김정숙, 1996; 국민은행가계조사, 1994)을 통해 알 수 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상속여부는 각 가계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이전시기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전체노인의 48.3%가 사후상속을 선호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상속액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이가옥, 1994). 국세청에 신고 납부된 세금자료를 통해 추정된 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상속액은 증여의 3배정도 수준에 달하는 반면에 상속세를 낸 인원은 증여세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 조세통계, 2000). 이전규모 면에서도 상속여부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의 관련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고찰

본 절에서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고찰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존의 증여가 향후 이루어지게 될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의하고자 한다.

1) 사회경제적 변수

(1) 부모의 연령

국내의 선행연구(이동훈, 1980)에서 나타난 이전시기 선택에 연령이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유교적 사고관의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가문의 전통을 잇게 하고, 부모 및 다른 가족원의 부양책임 소재를 장남이나 아들들에게 이동시키기 위해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를 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부모의 연령이 이전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Kao(1996)는 노인 가계보다 중년기 가계일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비나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노후의 의료비 지출 등을 낙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을 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Mutran & Reitzes(1984)에 의하면 노인들과 자녀들의 경제적 자원뿐 아니라 정신적, 서비스 교환정도를 조사하였는데, 노인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능력감소로 자녀들에 대한 도움주기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전확률은 적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자녀수

자녀수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비생활 유지, 인적자본 투자 및 경제적 자원의 이전규모에 대한 경쟁 때문에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자녀간 갈등을 막기 위해서 사전증여형과 같이 부모의 통제가 가능한 상태의 이전시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Kao, 1995; 홍공숙외, 1995). 자녀수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여부와는 관계에서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비생활 유지, 인적자본 투자 및 경제적 자원의 이전규모에 대한 경쟁 때문에 자녀들이 이전 받을 확률은 적어진다(Kao, 1995; 홍공숙외, 1995).

(3) 부모의 결혼상태

부모 중 다른 한 배우자의 생존이나 사별과 같은 결혼상태에 따라 소득 및 자산수준이 변화되고 자녀에게 기대하는 노후의 경제적 의존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이전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외로움을 달래고 사회적 감정교류(socio-emotional rewards)를 위해 자녀들과의 접촉이 증가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도움 주고받기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Mutran & Reitzes, 1984). 우리 나라에서는 배우자중 부인이 사망한 경우 남편쪽이 경제력을 여전히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의 절반은 70세 정도에 남편과 사별하며 자녀들은 결혼하여 집을 떠난 상태이므로 남편과의 사별은 생계수단의 상실을 초래하여 경제문제를 일으키거나(서병숙, 1991), 경제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남편과 사별하였다면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조기에 이전함으로써 재산을 정리하고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보다 무배우자가계인 경우에 이전시기가 보다 빠르고 성인 자녀에게 이전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자녀구성

자녀구성은 자녀의 성별과 관련하여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나라 부모의 남아선호사상이며, 이는 유교적인 배경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과거에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이었던 것은 가계의 계승과 노후의 경제적 및 심

리적 의존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한남제, 1989). 혈통, 재산, 제사 등이 모두 아버지에서 아들로 상속되는 부계 가족제도에서 가계 계승자로서의 아들이 필요했고, 노후대비가 불충분한 물물경제 시대의 경우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며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상은 많이 약화되어 왔으나(윤종주, 1974; 이동원, 1977; 한남제, 1989, 재인용), 아들딸에 대한 차별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의식이 없어진데 비하여 재산상속 등에 있어서는 아직도 출가외인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편이다. 따라서 자녀구성이 딸들로만 구성된 가계보다는 아들들로만 또는 아들딸이 혼합된 가계는 가계계승과 노후의존 대상이 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시기가 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고, 이전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자산과 소득

이전시기에 미치는 소득과 자산의 영향을 다룬 국내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국외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Cox(1987)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사적소득이전(vivos inter transfer)을 통해 자원이전의 4/5가 이뤄진다는 중요성에 입각하여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도 생전의 이전확률이 기부자의 소득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6) 법률 지식

우리 나라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법률은 민법편에 제시된 상속제도를 규율하는 상속법과 직접세법편에 제시된 세금과 관련된 증여·상속세법으로 나뉜다. 상속·증여세법은 1950년에 도입되어 몇 차례의 개정과 함께 입법당시의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오다가 1998년 12월에 개정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속법도 도입된 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1991년에 개정된 내용들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히 증여·상속세법의 경우 재산보유 현황에 대한 종합전산망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세수의 원천으로 지목되고 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훈(1980)은 증여·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1970년대에 들어서 경제적 자원이전의 시기가 以前의 흐름과 다른 변화를 가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사후상속이 주류를 이루어왔던 70년대 以前과는 달리 사전증여와 사전증여·사후상속의 혼합형이 증가한 반면 사후상속은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는 가능한 범위 내의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부모는 수반되는 각종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이전시기의 변화는 세무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이전시기에 따라 일정한 경제적 자원을 자녀들에게 이전하고 싶은 경우 상속법 및 증여·상속세법과 같은 제도에 따라 이전여부가 달라질 뿐 아니라 이에 관한 법률지식 수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이전과 관련된 법률지식이 부족한 경우 세금절감 면에서나 부모의 이전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전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가계에서도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하고자 한다면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특히 가계에서는 세금절감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정책의 변화와 상속법에 대한 지식도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향후의 이전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증여액

자녀의 성인기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기타증여액 및 이 비목들의 합인 기존증여액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중요한 부분이 될 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결정에도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증여와 상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존증여액의 비목별 규모가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기존증여액의 규모가 클수록 미래의 이전확률이 적어질 수 있다. 이는 자녀들에 대한 투자가 보다 많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에게 이전할 확률이 적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녀들의 대학교육을 위한 비용이나 결혼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많은 경우는 이미 자녀들의 교육이나 결혼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결혼이 완료되지 않은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 교육이나 결혼을 위한 비용지출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녀들의 주거마련 비용은 교육비용이나 결혼비용에 비해 마련 기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에 부모들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여러 회에 걸쳐 이루어질 경향이 크다. 따라서 기존에 지출된 교육비용과 결혼비용과 비교하여 이와 같은 특성은 미래의 이전확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 .

둘째, 기존증여액의 규모가 클수록 이전확률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이전 성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시기도 세금면에서 유리한 조기이전을 선택할 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 결혼, 주거마련, 기타증여 및 상속과 같은 단계에 따라 투자성향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투자성향의 차이에 따라 기존증여액의 규모는 미래의 이전여부와 이전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가지 방향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지만 부모의 연령, 자녀수, 결혼상태, 자녀구성 및 경제적 지위와 같은 특성이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 같은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다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이전 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전여부를 최종적인 자원이전을 할 것인지 아닌지로 이분화 하였으나 성인자녀에 대한 이전은 여러 비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주거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특정비목의 이전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이전비목으로 구분하여 이전여부를 조사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논문에서는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만자녀가 성인 시기인 중년후반기부터 막내자녀의 결혼과 독립이 이뤄지는 노년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년후반기부터 노년기에 해당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 이전시기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1. 이전시기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1-2. 이전시기에 따른 기존증여액과 증여예상액, 상속예상액은 얼마인가?

[연구문제 2]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이전여부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존증여액의 효과는 어떠한가?

2-1. 이전여부, 상속여부, 증여여부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2-2. 미래교육비용, 미래결혼비용, 미래주거마련비용, 미래기타증여액 이전여부의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 조작적 의미를 가진다.

이전시기란 성인 자녀들에 대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택, 땅,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현금, 금융기관 저축, 주식, 채권, 금괴 등과 같은 주요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시기를 말한다.

기존증여액은 자녀들이 성인기에 접어든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모가 지출한 자녀의 대학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및 기타증여액의 모든 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이전예상액은 부모가 성인 자녀들에게 앞으로 이전할 경제적 자원의 총합을 말한다. 이전예상액은 증여예상액과 상속예상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증여예상액은 부모의 생전에 성인자녀에게 앞으로 이전할 모든 경제적 자원의 총합으로 미래교육비용, 미래결혼비용, 미래주거마련비용 및 미래기타증여액의 합으로 구해진다.

상속예상액은 부모가 死後에 자녀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땅이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현금, 금융기관 저축, 주식, 채권, 금괴 등의 가치를 합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3. 변수의 도구작성

1)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이전시기는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모두 부모의 생전에 이전하는 경우를 사전증여형, 부모가 사망한 후에 경제적 자원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를 사후상속형, 생전과 사후에 일

정 부분씩을 나누어 이전하는 경우를 혼합형이라고 정의한다. 응답은 세 가지 중에서 범주화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전여부는 이전가계, 상속가계, 증여가계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으로 이전 가계는 앞으로 증여 또는 상속하려는 가계를 말한다. 상속가계는 부모가 死後에 땅이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현금, 금융기관 저축, 주식, 채권, 금괴 등을 자녀에게 이전하려는 가계를 말한다. 증여가계는 부모의 생전에 성인자녀에게 미래교육비용이나 미래결혼비용, 또는 미래주택비용이나 미래기타증여액을 이전하려는 가계를 말한다. 미래교육비용 이전여부는 앞으로 남아있는 대학 입학부터 지출될 자녀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자녀에게 이전하려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미래결혼비용 이전여부는 자녀들의 결혼에 수반되는 결혼식, 배우자 예물, 가족 예물, 살림마련, 신혼여행, 함 값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지원하려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미래주거마련비용 이전여부는 신혼기 자녀의 주거마련 비용과 자녀가 주택을 임대 또는 소유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각 자녀들에게 지원해 줄지의 여부를 말한다. 미래기타증여액 이전여부는 자녀의 대학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을 제외한 비목으로 부모가 死前에 성인 자녀에게 이전할 땅이나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현금, 금융기관 저축, 주식, 채권, 금괴, 운동회원권, 특정내구재 구매부담 비용 등의 자원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전하려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2) 설명변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설명하는 변수로 부모의 연령, 자녀수, 부모의 결혼상태, 자녀구성, 자산과 소득, 법률적 지식을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특성과 성인 자녀에 대한 비목별 기존증여액으로 구성하였다.

법률지식은 경제적 자원이전과 관련된 상속법과 증여·상속세법에 대한 지식 점수의 측정 은 각 법에 관한 질문 5문항씩에 대해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로 응답하게 하여 오답이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고,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다. 상속법과 증여·상속세법에 관한 법률지식 점수는 각각 0점에서 5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상속법과 증여·상속세법에 관한 문항은 일반가계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신문의 경제면에 자주 게재되는 것으로 선택하였다.

자녀구성은 자녀의 성별 구성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크게 딸들만 있는 가계, 아들들만 있는 가계, 아들과 딸이 혼합되어 있는 가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가계의 자녀들에 대한 성별조사를 통해서 조사되었다. 자녀구성의 차이가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딸들만 있는 가계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기존증여액은 자녀들이 성인기에 접어 든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모가 지출한 자녀의 대학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기타증여액의 모든 금액의 총합으로 구해진다. 기존증여액의 비목은 증여가계에서 설명된 각 비목에 포함된 내용들로 측정한 다음 통계청의 물가정보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 물가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표집 방법은 첫 단계로 서울시와 서울근교의 신도시에 거주하는 중년후반기와 노년기 가계 중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계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중년후반기 가계와 노년기 가계를 각각 비슷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문화일보의 '부동산 시세표(1997)'에 근거하여 자산과 소득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절히 구분하여 연구목적에 맞도록 의도적 표집을 통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질문지 문항을 정선하기 위하여 1997년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년기 후반기와 노년기 부모의 자산과 소득계층을 고려하여 표집한 표본가계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소득계층 면접은 주로 경로당, 노인정, 파고다 공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중·상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전화면접, 기원방문 등을 통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거나, 설명하기 힘들거나, 또는 너무 긴 문항의 질문을 수정하였으며, 이론적인 배경에서 제시되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관찰된 문항들은 첨가하였다.

본 조사는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7년 11월 20일부터 1998년 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재산의 증여와 상속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특성과 높은 연령층의 보수성으로 인한 응답거부,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중년후반기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특정 조건의 제약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본 조사에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뒤따랐다. 중년 후반기 가계는 서울시에 소재한 7개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통해 부모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면접요원들이 면접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노년기 가계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가정방문, 전화면접, 노인정, 노인대학, 기원방문, 파고다 공원, 지하철역의 노인 쉼터 등을 중심으로 한 면접조사를 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중 중간연령층에 해당하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집단의 경우 접근이 어려워져 다양한 경로를 통해 면접조사와 설문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8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응답거부로 인한 손실률이 매우 높아 총 530부가 회수되었고, 이 중 자산 수준이 다른 표본과 격차가 심해 결과의 편의가능성을 내포한 3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경우를 제외시켰다. 부적절한 조사대상이 표집된 경우와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476부가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조사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PC+와 SA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부모들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 시기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존증여액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성인 자녀들에 대한 이전 여부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존증여액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의 일반적 경향

본 절에서는 부모의 주요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고자 하는 시기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대상자들이 20.0%, 사후상속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30.7%,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9.3%로 가장 많았다. 사전증여와 사후상속보다는 선행연구들에서 빈도가 가장 적게 나타난 혼합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첫째는 증여나 상속을 이미 받은 다양한 연령계층을 조사대상자로 한 배종렬(1997)과 이동훈(1980)의 연구나 노년기만을 대상으로 한 김기경·박혜인(2001)의 연구와는 달리, 노년기와 중년후반기의 부모를 응답자로 포함시켜 자원이전이 진행중인 가계가 상당부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년후반기의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주기상 교육이나 결혼, 주거마련과 같은 단계가 아직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일부분의 자원이전을 원할 뿐 아니라 상속도 중요한 이전기제로 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혼합형은 상속과 증여로 인한 단점의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홍영립(1997)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생전의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상속의 경우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조기 이전으로 인한 자녀들의 의타심과 경제적 독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자녀들의 부모부양의식이나 효개념이 많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부모자신의 권위유지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노후부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Bernheim et al., 1985) 가능한 한 늦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된다.

혼합형다음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절감효과는 없지만 물적 자원을 통해 부모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이전을 자녀들에게 지속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성인자녀들의 부양행동이 통제가능하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표4-1> 이전시기별 이전규모

단위(만원)

이전시기	%	이전규모		
사전증여	20.0	기존증여액+증여예상액	56,322	100%
		상속예상액	0	0%
		합	56,322	100%
혼합형	49.3	기존증여액+증여예상액	45,152	70%
		상속예상액	18,620	30%
		합	63,772	100%
사후상속	30.7	기존증여액+증여예상액	26,967	47%
		상속예상액	36,660	53%
		합	63,627	100%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에 따른 이전규모를 살펴보면, 사전증여의 경우 이전규모는 5억

6,322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합형과 사후상속의 경우는 각각 6억 3,772만원과 6억 3,627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상속예상액을 보면, 세 가지 이전시기 중 사후상속의 경우 이전규모의 53%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증여액과 증여예상액의 합인 증여액은 사전증여의 경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의 경우 증여를 통해 경제적 자원의 70% 정도가 이전된 반면, 상속을 통해 30% 정도만 이전될 것으로 나타나 혼합형에서도 증여가 훨씬 더 중요한 이전시기였다. 또한 총 이전규모 183,721만원 중 증여를 통해 128,441만원, 약 70% 정도가 이전된 점은 Cox(1987)가 미국의 경우 전체 이전규모의 4/5(80%)의 이전이 증여(inter vivos giving)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가계의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이 증여를 통해서 이전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 이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전시기에 대한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시기는 사전증여, 증여와 상속의 혼합형, 사후상속으로 나누었으며, 범주형 종속변수인 이전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전시기 중 사후상속형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존증여액이 사전증여나 혼합형을 선택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앞 절에서와 같이 주거마련비용과 기타증여액간의 상관관계계수가 .59로 높아 비교적 응답기재율이 높은 주거마련비용을 채택하였다.

설명변수 중 부모의 연령, 자녀수, 자산, 소득, 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 상속법과 증여·상속세법 지식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고, 결혼상태는 유배우자를 기준으로, 자녀구성은 딸만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아들만 있는 아들가계와 아들+딸혼합가계로 구분하여 가변수화 하였다.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은 .05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7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증여에 대한 로짓모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모의 연령, 아들가계, 증여 및 상속세법지식과 주거마련비용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딸들만 있는 가계보다는 아들들만 있는 가계일수록, 세법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의 지출이 많을수록 사후에 상속하기보다는 사전에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에 대한 로짓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령과 주거마련비용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이 많을수록 상속정보보다는 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볼 때 연령과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이 두 개의 로짓 모형에서 공통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상속정보보다는 사전증여를,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상속정보보다는 혼합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전증여의 로짓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자녀구성변수와 연계하여 보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층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이 지배적이고 딸들은 출가의 인이라 하여 노후 의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을 띤다. 따라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딸들로만 구성된 가계보다는 아들들로만 이루어진 가계에서 아들들이 가계를 계승하고, 부모의 노후부양을 책임질 것이라는 보수적 성향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통제권을 이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혼합형 로짓모형의 경우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후상속보다는 혼합형을 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의 주기적 요소와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최종적인 자원이전시기를 상속보다는 증여나 혼합형을 선택하려는 성향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의한 자녀들의 복지향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두 모형에서 연령의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을 보다 많이 이전한 부모는 이전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혼합형의 경우에도 70%의 자원이 증여를 통해 이전되며, 증여를 통해 세금절감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속보다 증여를 통해 자녀의 경제적 복지를 이전즉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을 보다 많이 이전한 이전성향이 높은 부모들은 증여를 통해 자녀들의 복지수준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법지식수준이 낮을수록 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할 가계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법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면 세금절감효과를 얻고자 증여를 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동훈, 1980)을 감안하면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2> 사후상속을 기준으로 한 다항로짓 분석

종속변수 \ 독립변수		I (사전증여)		II (혼합형)	
		β	S.E.	β	S.E.
사회 경제적 변수	상수	-2.673	1.345	2.873	1.134
	연령	.051*	.022	-.044*	.019
	자녀수	-.165	.156	-.080	.127
	무배우자가계	-.560	.421	-.296	.353
	아들가계	.753*	.299	.178	.211
	아들+딸가계	.111	.210	-.192	.168
	자산	-1.0E-05	5.6E-06	3.8E-06	3.4E-06
	소득	-5.0E-05	3.4E-04	-2.9E-04	2.4E-06
	상속법지식	-.017	.126	.071	.104
	증여및상속세법 지식	-.253*	.127	-.102	.094
기존	교육비용	-6.0E-05	5.0E-05	-1.0E-05	2.1E-05
증여액	결혼비용	-3.8E-06	8.4E-06	2.4E-07	7.5E-06
변수	주거마련비용	5.4E-05**	2.0E-05	4.2E-05*	1.9E-05
X^2		858.3*			
p^2		.7261			

* p < .05 ** p < .01 *** p < .001

3. 이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비목별 이전예상액의 이전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존증여액을 독립변수로 하여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연령, 자녀수, 자산, 소득, 상속법과 증여 및 상속세법지식, 교육비용, 결혼비용, 주거마련비용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고, 결혼상태는 부부인 경우를 기준으로, 자녀구성변수는 딸만 있는 가계를 기준으로, 아들만 있는 가계와 아들+딸혼합가계를 각각 가변수화 하였다.

본 분석에 앞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순 상관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주거마련비용과 기타증여액간의 상관관계계수는 .59로 높아 비교적 응답기재율이 높은 주거마련비용만을 최종분석에 포함시켰다.

첫째, 이항로짓 분석은 경제적 자원 이전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은 가계를 기준(0)으로 하여 이전할 가계(1)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으로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본 모형은 .05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짓 분석에 포함된 설명변수들이 이전여부를 9.8%¹⁾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전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자녀수, 자산, 주거마련비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기존의 주거마련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앞으로 이전 할 가계에 속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인적 투자 및 소비지출에 있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자녀 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전할 확률이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홍공숙 외(1995)와 Kao(1995)의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주거마련비용이 미치는 영향력은 기존에 이전된 경제적 자원의 규모가 클수록 이전할 가계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므로 이전할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산과 같은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앞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1) 로짓 모형의 적합도 검정에는 모형의 정도(精度:precision)를 나타내는 ρ^2 값이 이용된다. 이 때 로짓모형이 완벽하면 ρ^2 값이 1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ρ^2 값이 .2에서 .4이면 모델이 만족스럽고, 그 이상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임종원, 1995).

<표 4-3> 이전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전가계		상속가계		증여가계	
		β	S.E.	β	S.E.	β	S.E.
사회경제적 변수	상수	2.18	1.03	-.83	1.05	6.54	1.26
	연령	-.02	.02	.03	.02	-.09***	.02
	자녀수	-.33**	.12	-.41***	.12	-.12	.14
	무배우자가계	-.16	.32	-.45	.33	-.35	.35
	아들가계	.04	.44	.25	.43	-.09	.53
	아들+딸가계	.34	.33	.14	.32	-.03	.43
	자산	1.0E-03***	5.0E-04	1.0E-03**	4.0E-03	1.2E-03*	5.0E-03
	소득	-4.0E-04	2.0E-04	-2.0E-03	3.0E-03	6.8E-05	4.0E-03
	상속법지식	.06	.10	.04	.10	-.02	.11
	증여 및 상속 세 법	.02	.09	.09	.10	4.2E-03	.11
	지식						
기존증여액 변수	교육비용	-1.0E-03	2.0E-03	8.7E-05	3.5E-03	.01	.01
	결혼비용	-1.0E-03	7.0E-04	-3.0E-03	6.0E-04	-1.6E-03*	7.0E-03
	주거마련비용	2.9E-03*	1.4E-03	1.5E-03	1.2E-03	1.7E-03	1.3E-03
χ^2		106.27***		68.18*		166.93***	
ρ^2		.0983		.0616		.1776	

* p< .05 ** p< .01 *** p< .001

둘째, 상속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가계를 기준(0)으로 하여 상속할 가계(1)에 속할 확률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본 모형은 .05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분석모형이었으며,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6.16%이었다. 상속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상속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이전확률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원에 대한 자녀 간 경쟁이 적어 각 자녀에게 상속할 확률이 높고,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이전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증여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가계를 기준(0)으로 하여 증여할 가계(1)에 속할 확률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본 모형은 .001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분석모형이었으며,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17.76%이었다. 증여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에 따르면, 영향력 있는 요인은 부모의 연령, 자산 및 결혼비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기존의 결혼비용지출이 적을수록 앞으로 증여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앞으로 남은 자녀들의 교육, 결혼 및 주거마련과 같은 단계들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증여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기존의 결혼비용 지출이 적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증여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자산이 미치는 영향력은 자산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이나 복지시설, 또는 기관보다는 자녀들에게 이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전 및 상속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은 앞으로 증여의 형태로 이전할 경우 다양한 증여예상액의 구성비목에 따라 이전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항로짓 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4> 및 <표4-5>과 같다.

먼저, 미래교육비용은 이전하지 않을 경우를 기준(0)으로 하여 이전할 경우(1)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였다. 미래교육비용 이전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 <표 4-4>에 따르면, 본 모형은 .001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44.90%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래교육비용의 이전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의 연령과 결혼상태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자가계가 미래교육비용을 이전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부모의 연령과 결혼상태는 가계의 생애주기의 진척 수준과 관련되므로 부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또는 무배우자가계는 자녀들의 교육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미래교육비용을 이전할 확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래교육비용의 이전여부에 대한 로짓 모형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요인보다는 생애주기의 단계 및 기타 특성에 의해 미래교육비용의 이전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미래결혼비용은 이전하지 않을 예정인 가계를 기준(0)으로 이전할 가계(1)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규명하였다<표 4-5 참조>. 본 모형은 .001 유의수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49.03%이었다. 미래결혼비용 이전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자가계가, 딸들만 있는 가계일수록 또는 기존의 주거마련비용과 결혼비용 지출이 적을수록 미래결혼비용을 이전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연령과 결혼상태 이외에 기존에 지출된 결혼비용과 주거마련비용이 적다는 것은 자녀들의 결혼완료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래에 결혼비용을 이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딸만 있는 가계가 아들만 있는 가계보다 결혼비용에 대한 이전 확률이 높은 것은 딸인 경우 혼수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4-4> 미래교육비용과 미래결혼비용 이전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미래교육비용 이전 가계		미래결혼비용 이전 가계	
		β	S.E.	β	S.E.
사회 경제적 변수	상수	14.85	1.80	11.79	1.79
	연령	-.27***	.03	-.17***	.03
	자녀수	.15	.16	.22	.18
	무배우자가계	-1.17*	.45	-.10*	.43
	아들가계	.06	.55	-1.75*	.77
	아들+딸가계	-.36	.43	-1.23	.68
	자산	3.0E-04	4.0E-04	6.0E-04	6.0E-03
	소득	3.0E-04	4.0E-04	1.3E-04	7.0E-03
	상속법지식	.11	.13	.18	.13
	증여및상속세법 지식	.17	.12	-.08	.14
기존	교육비용	4.0E-03	3.2E-03	1.4E-03	4.5E-03
증여액	결혼비용	-1.5E-03	1.2E-03	-3.9E-03***	1.1E-03
변수	주거마련비용	-2.3E-03	1.9E-03	-6.8E-03***	2.1E-03
χ^2		566.04***		514.91***	
ρ^2		0.4490		.4903	

* p< .05 ** p< .01 *** p< .001

<표 4-5> 미래주거마련비용과 미래기타증여액 이전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미래주거마련비용 이전 가계		미래기타증여액 이전 가계	
		β	S.E.	β	S.E.
사회 경제적 변수	상수	7.67	1.49	-.78	1.09
	연령	-.12***	.02	.04*	.02
	자녀수	-.08	.15	-.59***	.14
	무배우자가계	-1.08**	.37	.21	.34
	아들가계	-.16	.56	-.76	.44
	아들+딸가계	.13	.45	.13	.33
	자산	4.0E-04	5.0E-04	9.0E-04**	3.0E-03
	소득	2.4E-03***	7.0E-04	5.4E-05	2.0E-03
	상속법지식	.09	.12	-.07	.09
	증여및상속세법 지식	.21	.13	-.21*	.09
기존	교육비용	3.2E-05	4.4E-03	-5.0E-04	2.2E-03
증여액	결혼비용	-1.8E-05*	9.0E-04	-1.6E-04	8.0E-04
변수	주거마련비용	-3.9E-05*	1.6E-03	2.7E-03*	1.1E-03
χ^2		389.59***		93.38**	
ρ^2		.6304		.0864	

* p< .05 ** p< .01 *** p< .001

셋째, 미래주거마련비용은 이전하지 않을 예정인 가계(0)와 이전할 가계(1)를 이분하여 이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였다<표 4-5 참조>. 본 모형은 .001 유의수준에서 적합하였으며, 분석모형의 설명력은 63.04%로 나타났다. 이항로지 분석 결과로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자가계,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존의 결혼비용과 주거마련비용을 위한 증여가 적을수록 미래주거마련비용을 이전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래결혼비용에 대한 로짓 모형에서와 같이 부모의 연령과 결혼상태 및 결혼비용과 주거마련비용이 미치는 영향력은 생애주기 단계의 진척수준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래주거마련비용에 대한 모형에서는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미래주거마련비용을 이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자녀의 주거마련비용 보조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기타증여액을 이전하지 않을 가계를 기준(0)으로 하여 이전할 가계(1)에 속할 확률에 대한 이항로지분석 결과는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본 모형은 .01 유의수준에서 적합되었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8.64%로 나타났다. 미래기타증여액 이전에 대한 이항로지 분석 결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산이 많을수록, 증여 및 상속세법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존의 주거마련비용 지출액이 많을수록 미래기타증여액을 이전할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와 같이 부모의 연령은 자녀의 생애주기 단계의 진척수준을, 자녀수는 경제적 자원에 대한 자녀간 경쟁을, 자산은 경제적 지위의 효과를, 이전여부 분석모형에서와 같이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은 이전할 성향이 높음을 보여준다. 증여 및 상속 세법 지식 수준이 낮을수록 미래기타증여를 할 확률이 높는데 이는 부족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무관리 교육을 통해 법적 지식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이전예상액의 이전여부에 대한 로짓 분석을 통해서 각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은 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각 가계의 특성을 통해 비목별 이전여부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전 여부 및 각 비목의 이전여부는 각 자녀들의 생애주기와 진척수준과 관련된 변수와 경제적 변수가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자녀수와 같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자녀간 경쟁 요인, 그리고 증여 및 세법지식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존의 주거마련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이전할 확률과 기타증여액을 통해 이전할 성향이 높음도 제시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가 가족간 유대관계와 가계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큰 반면에 이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루어졌다. 상속과 증여에 관한 기존연구들 중 이전시기와 이전여부를 다룬 연구들은 농촌이나 도시가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나 상속이나 증여의 경험이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중노년기 가계의 여러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연구들은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시점에 최종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전시기를 생전에 미리 하는 증여나 사후에 이전하는 상속으로 구분하여

선택하는 내용으로 연구하였으며, 이전여부도 단일화된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여러 기간에 걸쳐 다양한 비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주요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와 이전여부는 기존에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이전비목의 규모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전과 관련된 현행법 체계와도 관련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자녀의 성인기 시작부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최종적인 정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전시기와 이전여부를 종합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도시가계의 중년후반기와 노년기 가계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접 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몇 가지 결론과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시기는 선행연구들에서 빈도가 가장 적게 나타난 혼합형이 가장 많았고, 사후상속, 사전증여의 순서로 나타났다. 혼합형의 경우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자원이전과 동시에 자녀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생전의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과 상속의 경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조기 이전으로 인한 자녀의 경제적 독립심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자녀들의 부모부양의식의 약화로 부모자신의 권위유지와 경제적 자립, 그리고 노후부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자녀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늦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모두를 통해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혼합형다음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도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절감효과 면에서 불리하지만 조기이전에 따른 단점보완과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전시기에 따른 이전규모를 살펴보면, 혼합형의 경우 증여를 통해 경제적 자원의 70%정도가 이전된 반면, 상속을 통해 30%정도만 이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인 이전규모 면에서 자녀의 성인기부터 최종적인 자원이전 완료기까지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통해서 70%정도의 자원이 이전되는 반면 성인 자녀에 대한 최종적인 이전시기로는 사전증여보다는 사후상속이 더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 자원 중 더 많은 부분이 증여를 통해서 이전됨으로서 세금절감과 더불어 자녀들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며, 동시에 상속을 통해서 경제적 자원의 일부를 임종까지 보유함으로써 조기이전에 따른 단점보완과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내용보다 중·노년기를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최근의 이전시기 경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전시기에 따른 이전규모를 밝힘으로서 증여·상속으로 이원화된 이전시기를 좀 더 폭 넓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인 자녀에 대한 이전은 경제적 자원의 70%정도가 증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증여나 상속을 통해 부모의 자원이전이 완료되며, 부모들은 이전시기에 따라 이전규모에 차이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사후상속의 경우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심을 고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을 부모 자신이 가능한 한 늦게까지 보유함으로써 노후대비에 보다 안전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보장제도가 없는 우리사회에서 조기증여에 의한 이전보다는 사후상속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노년기 부모의 경우 사전증여를 통해서 더 많은 자원을 이전하고, 자원의 나머지 일부분만을 사전증여나 사후상속을 통해 이전하는 점은 재무계획수립과 관련법에 대해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사전증여를 통해 자원의 과도한 이전을 한 경우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 이상 시에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부양자에 대한 확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노후의 경제적 자원관리와 더불어 성인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재무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다.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재무계획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상속법과 관련 세법에 관한 지식 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응답자의 증여·상속세법 및 상속법에 대한 지식 수준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증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반면에 상속세는 부과되는 대로 내야 한다는 점과 상속법상 별도의 부모의 조치가 없는 한 자녀들 간 균등분배에 의한 법적 상속분이 이전된다는 점 등 관련법에 관한 지식수준은 이전시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합리적인 재무계획과 실행 뿐 아니라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이전관련 법체계가 일반대중에게 잘 알려져야 하며, 대중매체나 공익방송 또는 노인대학 같은 경로 등을 통해서 재무관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증여세법에서 정한대로 성인자녀 일인당 5년 이내에 3천만원까지, 자녀가 30세가 넘은 경우 2억원 이하의 주택구입비용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과정에서 이 금액 이상의 주택비용 보조를 해 준 경우 세금을 냈거나 이와 관련된 세법지식을 갖고 있는 가계의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관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증여·상속 세법 및 상속법의 경우 각 가계에서 행해지기 힘들거나 법망을 손쉽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과 같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2003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려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전시기별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기존의 주거마련비용의 이전이 많을수록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에 증여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낮을수록, 기존의 주거마련비용 이전이 많을수록 상속형보다는 혼합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연령층이 높을수록 남아선호사상이 높아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자원의 조기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부양 문제 및 법적 정보가 고령층에게 확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전성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기존의 주거마련비용 이전을 많이 한 부모의 경우 상속보다는 혼합형을, 상속보다는 증여를 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성향이 큰 부모들일수록 세금면에서 유리한 증여를 보다 많이 선택하는 것은 이전에 의한 자녀들의 부의 증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액이나 증여액과 더불어 노후의 경제적 자립도에 관한 자료를 통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본 연구결과는 부모들이 이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동기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과도한 자원이전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모의 이전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충분한 노후대비를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을 어느 정도는 시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인 자녀에 대한 높은 이전성향은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과 건전한 근로의욕에 저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 자녀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보다 많은 이전을 통해서 자녀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증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법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증여를 선택하리라는 예상과 반대되는 결과를 통해서 자원이전을 계획하는 부모들은 세법 및 상속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전여부 중 미래교육비용과 미래결혼비용과 같이 비교적 부모에게 있어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 비목의 이전여부는 생애주기 진척과 관련된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난 반면에 상속여부, 증여여부, 미래주거마련비용, 미래기타증여액의 이전여부의 경우 부모들의 경제력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자산 및 소득과 같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존에 이전된 자원의 규모가 클수록 미래의 자원이전확률이 증가하였다. 미래의 특정비목의 이전여부보다는 구체적인 이전규모 크기의 증감을 통해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전여부의 확률만으로 이와 같은 가계의 이전 경향이富力 세습 및 가계 간 경제적 불균등의 심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해석을 내리기에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따르지만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부모의 과도한 자원이전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 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독립심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인 분위기의 전환 및 각 가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시 이전여부에 대한 부모들의 의사결정은 비목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원이전에 관한 재무계획을 세울 때는 이전 비목별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기존증여액을 선택하였다. 이전시기와 이전여부에 따라 노후의 부양문제나 경제문제, 자녀의 의타심이나 독립심약화와 같은 문제점들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부모의 문제점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후속연구에서는 성인 자녀에 대해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이후의 경제생활만족도와 같은 주관적인 특성이나 노후의 경제적 지위, 자녀들의 부모부양 서비스 제공정도 등을 파악하여 성인 자녀에 대한 이전시기 및 이전여부와 노후의 경제적 복지수준과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에 경제적 자원이전 이후의 성인자녀들의 경제적 복지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도나 자녀들의 문제점 관련 변수를 포함시킨다면 가계의 바람직한 자원이전방향과 가계재무계획에 대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전여부는 비목별로 나누어 부모의 기존증여액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는데, 비목별 이전여부 대신 구체적인 비목별 이전규모가 주어진다면 기존증여액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를 둔 중년후반기와 노년기를 조사대상으로 하였고, 이전여

부와 이전시기에 있어 연령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노년기와 중년후반기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치관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고 자녀들에 대한 이전진행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중년후반기와 노년기를 구분하여 이전시기와 이전규모에 있어서 집단간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이전기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면접대상을 부분적 또는 임의로 선정했기 때문에 도시가계의 대표성에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각 연령 및 소득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완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